

◆ 서초구공고 제2020-1295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공사완료 공고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-81호(2019.05.02.)에 의해 도시계획시설(도로)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-172호(2020.08.06.)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이 완료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2020년 8월 27일

서 초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 -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2-15일대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
 - 명칭 : 서초구 서초동 1592-1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
 - 도시계획시설[소(국)3-3로선] 확장사업-
3. 사업의 규모

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결정일	비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	
소로	3	3	6	국지도로	131	서초동 1592-17	서초동 1590-15	2019.05.02. (서초구2019-81호)	-

4.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
 - 명칭 : 마스틴제12호서초피에프브이 주식회사(대표 하병훈)
 -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65, 20층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155-678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◆ 송파구공고 제2020-1322호

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안) 열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8-1743('18.12.13)호로 열람공고하고, 2020년 제9차 서울시 도시·건축 공동위원회('20.07.08) 심의를 통해 수정가결 된 문정택지 (문정동 150번지 일대)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.

3.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(안)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8월 27일

송 파 구 청 장

가. 공 고 일 : 2020.08.27.

나. 열람기간 : 2020.08.27. ~ 2020.09.10.

다. 열람장소 : 송파구청 도시계획과

라.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안)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 후	
신설	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	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일대	-	증)447,135	447,135	

-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
구역명	변경내용	결정(변경) 사유
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	신규지정: 증)447,135㎡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

2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: 기존 도시기반시설(도로) 등에 관한 결정 사항

3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: 가구 및 획지계획, 건축물의 용도, 밀도, 높이, 배치, 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 사항

마. 관계도서 : 생략 (열람 장소에 비치)

바.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열람편의 및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(담당: 정은애/☎:2147-3001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 끝.